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마동환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13-85

발의연월일 : 2013. 10. 14

발 의 자 : 마동환, 김효철, 박영길
송병길, 윤동현, 조영덕
차재홍, 한일용 의원(8명)

1. 개정이유

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을 이용(강습)하는 프로그램 수강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이용 차량에 대한 주차료 면제 시간을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제2조제1항 관련, 별표 1 "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"의 비고 중 제20호가목 중 "90분"을 "2시간 이내"로 함

3. 개정근거

「주차장법」 제14조

4. 개정조례안 : 따로붙임

5. 예산조치 : 필요

6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3. 10. 15 ~ 10. 20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신·구 조문 대비표 1부 : 따로붙임

다. 예산조치 관련 지방자치단체장 의견 : 붙임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관련, 별표 1 "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" 의 비고 중 제20호가목 중 "90분" 을 "2시간 이내"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［별표 1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 - 비 고 - 20. 공영주차장의 부대시설로 설치된 생활체육관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(이하 이 호에서 “공공시설”이라 한다) 이용자 등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한다. 단,학교복합화시설로 설치된 공영주차장은 학교복합화시설 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. 가. 공공시설 이용(강습)자의 차량 : 수강 시마다 **90분** 면제 나. 공공시설 지도강사가 이용하는 차량 : 정기권 50% 할인(단, 중복할인 불가)	［별표 1］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 관련) - 비 고 - 20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 가. ---------- ---------- **2시간 이내** ----- 나. ---------- ----------

"청탁, 받지도 하지도 맙시다"

마포구

복지마포

마포구가 앞장하는 청렴세상

수신자 마포구의회의장

(경유)

제목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개정 관련 의견 제출

1. 마포구의회 - 5058(2013.10.15)호와 관련입니다.

2. 의원발의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」에 대한 우리구 의견을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.

붙임 : 의견서 1부. 끝.

마포구청장

★주무관 김인숙 주차장관리팀장 김도원 교통지도과장 10/18 이윤우

협조자

시행 교통지도과-28509 (2013.10.18.) 접수 마포구의회-5158 (2013.10.21.)

우 121-711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(성산동) /http://www.mapo.go.kr
전화 02-3153-9662 /전송 02-3153-9699 / isle710@mapo.go.kr / 공개

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제정 관련 부서 의견

(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 관련)

조례안 제명	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
발의 의원	마동환 의원 외 7인
소관부서	교통지도과
상임위원회명 및 상정예정일	행정건설위원회, 2013. 10. 25 상정 예정
사전보고 단계	
검토의견	조례개정에 따른 수입금 감소는 최대로 산출했을 때 100,125,000원으로 예상되며, 이 금액은 2014년 주차수입금 예산의 1.3%로 추정됨.